■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3서식] <개정 2017. 10. 26.>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용기개수

장착 위치	용 기					용기밸브		안전장치	
	용기 제조사	제조 일련번호	제조 연월	내용적 (ℓ)	용기형식	모델명	일련 번호	모델명	일련 번호
검사희망일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안전장치번호는 해당하는 자동차만 기재합니다.
2. 용기형식은 CNG1, CNG2, CNG3, CNG4, LNG, CHG로 구분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사
	↓
	검사결과 기록
	↓
	합격 여부 판정
	↓
← 통 보	각 인 또 는 파 기 등